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례 심의절차 효율화, 기업 부담 완화, 관계부처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융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5호, 2025.12.2. 공포, 2026.6.3 시행)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동일·유사과제의 절차 간소화, 동일·유사과제의 정의,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취소, 손해배상금의 수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종전의 분야별·사안별 전문위원회를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와 사안별 전문위원회로 개편하고,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법 제10조의3제8항 및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종전에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의 제출서류 면제 방안을 규정함(안 제11조의3제1항 및 안 제11조의6제1항)

다. 법 제10조의3제8항 및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른 “종전에 규제특례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을 규정함(안 제11조의3제8항 및 안 제11조의6제10항 신설)
- 라. 법 제10조의4제10항 및 법 제10조의6제1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그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취소를 신청하는 절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판단 기준을 규정함(안 제11조의4제12항 및 제13항 신설, 안 제11조의6 제16항 및 제17항 신설)
- 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한 경우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그 절차의 진행 중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을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과 당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 중 늦은 날로 함(안 제11조의5제11항)
- 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유관 전문기관·단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8제1항)
- 사.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방법·절차 및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37조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의”를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으로, “25명”을 “20명 이내,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야별”을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융합 및 그 촉진”을 “심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을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야별”을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같은 조 제1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을 각각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으로 한다.

①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법 제8조제10항제1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전문위원회(이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라 한다)

2. 법 제8조제10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처리하는 전문위원회(이하 “사안별 전문위원회”라 한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산업융합신제품·서비스가 법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출서류 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제8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제19항 및 제20항으로 한다.

⑧ 법 제10조의3제8항에서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란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신제품·서비스의 기능·내용 및 제공 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

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4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10조의4제10항에 따라 규제특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10조의4제10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해당 규제특례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취소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실증의 목적 등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의 사업실시계획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제11조의5제11항제1호 중 “날”을 “날(법 제10조의3제11항 및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종료일이 더 늦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법령정비요청자”를 “해당 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로 한다.

⑫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제10조의4제5항 및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른 중

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출서류 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6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법 제10조의6제12항”을 “법 제10조의6제13항”으로, “자”를 “사업자”로, “허가등”을 “허가 등”으로, “마련되었다”를 “정비되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10조의6제7항에서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란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신제품·서비스의 기능·내용 및 제공 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⑮ 법 제10조의6제16항에 따라 임시허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임시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⑯ 법 제10조의6제1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해당 임시허가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취소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임시허가의 목적 등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의 사업실시계획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제11조의8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관 전문기관·단체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제37조를 제37조의2로 하고,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제11조의3 제11항 및 제11조의6제7항에 따른 배상청구인이 손해배상금을 본인 명의의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법 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계좌번호,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손해보험금 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손해배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6 제2호가목1) 위반행위란 1) 중 “1개월 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2) 위반행위란 2) 중 “1개월부터 3개월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3) 위반행위란 3) 중 “3개월부터 6개월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4) 위반행위란 4) 중 “6개월이 지난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는”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위반행위란 나목 중 “법 제10조의4제7항”을 “법 제10조의4제8항 또는 법 제10조의7제2항”으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을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취소·종료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위반행위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10조의4제9항 및 법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산업융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법 제8조제10항제1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전문위원회(이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라 한다) 2. 법 제8조제10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처리하는 전문위원회(이하 “사안별 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 ----- ----- -- 20명 이내,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 ----- ----- ----- -----. ③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산업융합 및 그 촉진과 관련
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
는 사람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및 제4
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8조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
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

1. (현행과 같음)

2. 심의 사항-----

<삭 제>

⑤ ----- 제3항제2호-----

-----.

⑥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
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회의마다 제4항
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다.

⑨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
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또는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
가 신청의 시험·검증 및 표준
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기
술표준원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

-----.

⑦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
안별 -----

-----.

<삭 제>

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⑫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또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⑬ (생략)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⑩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

-----.

⑪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

-----.

⑫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

-----.

-----.

⑬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1. ~ 7. (생략)
② ~ ⑦ (생략)
<신설>

신청 등) ① -----

----- . 다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법제10조의3
제8항에 따른 종전에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
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
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
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
관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
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출서류 면제
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조의3제8항에서 종전
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⑧ ~ ⑯ (생략) ⑱ · ⑲ (생략) 제11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⑪ (생략) <u><신설></u> <u><신설></u>	<u>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란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신제품·서비스의 기능·내용 및 제공 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u> ⑨ ~ ⑰ (현행 제8항부터 제16항까지와 같음) ⑲ · ⑳ (현행 제18항 및 제19항과 같음) 제11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u>⑫ 법 제10조의4제10항에 따라 규제특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u>⑬ 법 제10조의4제10항 후단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u>
--	---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의 연장 등) ① ~ ⑩ (생략)

⑪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
간으로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이 연장되는 기간은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를 말한다.

1. 해당 규제특례 내용이나 조
건의 변경·취소가 국민의 생
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경우

2. 실증의 목적 등 법 제10조의3
제6항제1호의 사업실시계획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의 연장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

1. -----

-- 날(법 제10조의3제11항 및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유효
기간의 종료일이 더 늦은

2. (생략) ⑫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u> ⑬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u>법령정비요청자에게</u>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⑭ (생략) 제11조의6(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u>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를 말한다)</u> 2. (현행과 같음) ⑫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제10조의4제5항 및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u> ⑬ ----- ----- ----- ---- <u>해당 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u>----- -----. ⑭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 ----- -----
---	---

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1. ~ 6. (생략)
② ~ ⑨ (생략)
<신설>

다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법 제10조의6
제7항에 따른 종전에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
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
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
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
관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
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
상부장관은 제출서류 면제의 기
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산업
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10조의6제7항에서 종전
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
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
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란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⑩ ~ ⑫ (생략)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10조의6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신설>

적용된 기술, 신제품·서비스의 기능·내용 및 제공 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⑪ ~ ⑬ (현행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⑭ ----- 법 제10조의6제13항-----

----- 사업자-----
----- 허가 등-----
----- 정비되었다-----
-----.

⑮ 법 제10조의6제16항에 따라 임시허가 부여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임시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⑯ 법 제10조의6제1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11조의8(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및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융합 관련 전문기관·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③ (생략)

나를 말한다.

1. 해당 임시허가 내용이나 조건의 변경·취소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임시허가의 목적 등 법 제10조의6제6항제1호의 사업실시 계획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제11조의8(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유관 전문기관·단체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제11조의3제11항 및 제11조의6제7항에 따른 배상청구인이 손해배상금을 본인 명의의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법 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계좌번호,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제37조 (생 략)

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손해보험금 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손해배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의2 (현행 제37조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연 락 처	(044) 203 - 4546